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9
------------	------

발의 연월일 : 2016. 11. 10.

발의자 : 서영교 · 윤관석 · 권미혁

김해영 · 강병원 · 전혜숙

김상희 · 도종환 · 박완주

박광온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8호).

법률 제 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p> <p>1. ~ 7. (생략)</p> <p>8. 미성년자, <u>금치산자</u> 또는 <u>한정치산자</u></p> <p>9.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9조(결격사유 등)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u>피성년후견인</u> 또는 <u>피한정후견인</u></p> <p>9.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